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고 제2024 - 18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 공개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대변인(임기제서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6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 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지역
대변인	서기관 (일반임기제)	1명	채용일로부터 3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2 주요업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 공보
○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 및 협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홍보 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4.6.28.) 기준]

※ 응시요건(자격, 경력, 학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응시요건	자격	관련분야 : 재판, 수사 관련 경력자
		변호사(국내)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자
	경력	관련분야 : 신문·방송(언론) 기획, 광고·홍보 분야 관련 근무경력
		①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5급 또는 5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학위	관련분야 학위 : 신문·방송(언론정보), 광고·홍보, 커뮤니케이션 등 관련분야 : 신문·방송(언론) 기획, 광고·홍보 분야 관련 근무경력
		①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자격증, 경력, 학위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예) 자격증 /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1 / 학위2 / 학위3

→ 자격증, 경력 및 학위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4.6.28. 예정)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과장(상당) 이상 직위에 '경력'요건 중 '민간근무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 근무경력 필요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① **(조직체계)**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ⅰ)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인정하지 않음(임시조직·TF팀 등)
ⅱ)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② **(업무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③ **(근무형태)**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④ **(증빙의무)** ①~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4.6.14.) 기준]

우대요건	○ 응시자격 충족 이후 관련분야 직무경력 ○ 언론사 사회부 기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력에 한함)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경력 또는 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함)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할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6.4.(화) ~ 6.14.(금)	'24.6.10.(월) ~ 6.14.(금)	'24.6.24.(월)	'24.6.28.(금)	**'24.7.10.(수)** (예정)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6. 10.(월) ~ 6. 14.(금)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응시원서는 붙임3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주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
  - 주소: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6.14.)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겉봉투에 **'대변인 응시원서 재중'** 표기(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자는 제출하는 서류목록을 체크하고 이하 제출서류는 상기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②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정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 중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

④ 자기소개서(A4 2매 작성) 1부 <별지서식 제4호>

* 직무수행능력 및 본인의 강점.장점, 임용예정직위와의 직무적합성 등 A4용지 2매로 기술하며, 학교명, 출생지 등 불필요한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⑤ 직무수행계획서(A4 2매 작성) 1부 <별지서식 제5호>

* 임용예정 직위의 담당직무에 대해 직무수행 및 추진계획,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 등 기술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⑧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만 제출

*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⑨ 변호사 등록증 1부 * 해당자에 한함

* 변호사 미등록자는 사법연수원 수료증(사법시험 합격증 포함)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 사본 제출

⑩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미기재시 경력 불인정), 주당 근무시간 표시(예: 주00시간),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FAX 번호 포함)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비상근경력(시간제 경력)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주00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내용 미비,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를 별도 첨부(기관 직인 또는 관리자 서명 등 반드시 포함)

⑪ 자격요건 관련 학위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 사본 각 1부

* 석·박사 학위증명서에는 반드시 전공 기재 필요
* (국외학위 취득자) 학위증 및 졸업증명서 사본(2개 모두) 제출(한글번역본 첨부)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학위수여(졸업)예정증명서 제출도 가능하나, 최종시험(면접)일 현재 해당 학위를 소지하여야 함(응시자격요건이 '학위' 응시자에 한함)

⑫ 자격·우대요건 관련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원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제출
* <u>소득금액증명원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모두 나오도록 발급</u>

⑬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증빙 용도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증빙자료(학위, 논문, 경력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 **국외 학위 및 근무(연구)경력의 경우 담당교수 등 학위취득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FAX, 이메일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7. 10. ~ 8. 10.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7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4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4호	-	66,122천원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공무원임용규칙 제123조의2 면제사유 해당시 면제)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팀(02-6320-0376)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대변인)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직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실	서기관(임기제)	언론공보 및 대응	1명

주요 업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 공보 ○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 및 협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홍보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리더십, 기획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문제이해 및 해결능력,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필요 지식	○ 신문·방송 등 언론정보, 대언론 관계, 커뮤니케이션 관련 전문 지식 ○ 재판 및 수사 관련 전문지식

응시요건(택1)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응시요건(자격, 경력, 학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관련분야 자격 : 변호사 자격 소지 후 재판, 수사 관련 근무 경력자 관련분야 경력 : 신문·방송(언론) 기획, 광고·홍보 분야 관련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 신문·방송(언론정보), 광고·홍보, 커뮤니케이션 등	
	자격	① 변호사(국내)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자
	경력	①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5급 또는 5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학위	①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ㅇ 응시자격 충족 이후 관련분야 직무경력 ㅇ 언론사 사회부 기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력에 한함) ㅇ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경력 및 학위 요건 응시자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ㅇ 서류목록 체크 후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 금지)
2.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ㅇ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ㅇ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택 1 기재) 및 우대사항, 가산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구 분	내 용
8.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만 제출 ㅇ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9. 변호사 등록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변호사 미등록자는 사법연수원 수료증(사법시험 합격증 포함)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 제출
10.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1.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12. 자격·우대요건 관련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제출 ㅇ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모두 나오도록 발급
13.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증빙 용도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참고 1 “공무원 채용시험 봄” 포스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직문화와 공무원 채용에 대한 궁금증들
지금 바로 공무원 채용시험 봄 에서 확인하세요!

전격 공개!

2024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구 분		원서제출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공개경쟁 채용시험	5급공채(행정)	1. 25. ~ 29.	3. 2.	6.28. ~ 7.3.	-	10. 29. ~ 31.	11. 15.
	5급공채(기술)			7. 4. ~ 9.			
	외교관후보자 선발			6. 28 ~ 7. 3.		11. 1.	
	7급공채	5. 16. ~ 20.	7. 27.	10. 12.		12. 4. ~ 7.	12. 20.
	9급공채	1. 18. ~ 22.	3. 23.			5. 28. ~ 6. 2.	6. 21.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1. 30. ~ 2. 2.	3. 2.		4월 중	5. 9. ~ 10.	5. 24.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7. 22. ~ 26.	8. 31.		10월 말	11. 26. ~ 28.	12. 20.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시험		6. 3. ~ 11.	7. 27.		9월 중	11. 6. ~ 13.	12. 30.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3. 26. ~ 4. 1.	-		4월 말	6. 20. ~ 21.	8. 14.

-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들어오셔서 (2024년도 시험일정 사전 알림 신청)을 선택하시면 **원서제출기간 및 시험기일 1주일 전에 SMS 문자로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예정직렬 및 선발인원, 응시자격요건, 시험과목, 시험방식** 등의 자세한 시험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2040 청춘(청春) 세대**가 **대한민국 정부, 공직문화, 공무원 채용**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창구이자 **동기부여가 되는 희망찬 이야기**를 선해 드리기 위한 **공직 소통 채널** 입니다.

참고 2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소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인사혁신처

1. 임신·출산 환경 지원 ❶

[휴 직]

질병휴직

✔ 임신중독증 등 임신 관련 질환 및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중 임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복직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필요 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여성공무원이 임신 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된 경우,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출근 의무가 없는 육아휴직 중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출산 시, 인사부서에 복직신청을 하여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 가]

(임신 전) 난임치료시술휴가

✔ 여성공무원은 인공수정 시술 시 총 2일, 체외수정 시술 시 총 3~4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남성공무원은 정자 채취일 당일 하루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시술별 특별휴가 일수>

대상	시술 종류	휴가일수
여성	인공수정 시술	2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	3일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	4일
남성	정자 채취	1일

(임신 후) 임신검진휴가

✔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임신·출산 환경 지원 ❷

[휴 가]

(임신 후)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특별한 제한요건이 있나요?

A.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출근을 전제로 하는 또 다른 특별휴가인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전·후) 출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다태아의 경우 120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다태아 임신 시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기간 배치는 의료기관 진단서상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 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5일로 확대**하고, 120일 이내 범위에서 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23년 하반기 시행 예정)

[인사관리]

임신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허용

✔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 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허용됩니다.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기간 출장 제한

✔ 기관장은 임신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신 공무원이 신청 시, 장거리·장기간 출장이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공무원 야간 및 휴일 근무명령 금지

✔ 기관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야간(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휴일(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해당 공무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 근무명령이 가능합니다.

2. 임신·출산 물적 지원

[맞춤형 복지]

난임 시술비 지원

✔ 난임 시술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점수 500점(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모자보건법」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해 1회 지원합니다.

태아·산모 검진비 지원

✔ 임신·출산 시 검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점수 총 200점(2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 출산 축하금 지급

✔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2,000점(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3,000점(300만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합니다.

➪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 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사업]

공무원 연금대출

✔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이거나, 신혼부부 공무원 등은 사회정책적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대출에는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3종이 있으며, 사회정책적대출은 다른 대출 대비 1%p 낮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Q. 사회정책대출을 받기 위한 신혼부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 신청 시, 결혼 전 6개월 이내 또는 결혼 후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결혼 전 신청 시에는 예식장 계약서로, 결혼 후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에게는 가점이 부여되며, 입주 중에 임신·출산할 경우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임대주택 신혼부부 가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결혼 전 6개월 이내 또는 결혼 후 7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때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빙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임대차계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하면 됩니다.

출산준비용품 지원사업

✔ 임신·출산 공무원에게 1자녀당 5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전용 온라인몰에서 원하는 용품을 선택·구매 가능합니다.

3. 육아 환경 지원

[휴 직]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A. 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8세 이하(만9세가 되기 하루전까지) 또는 국내학교 학제 기준 초등학교 2학년 이하(3학년이 시작되기 전날까지)이어야 합니다. 연령과 학년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사용 가능하며, 기간 초과 여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육아휴직 사용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가족돌봄휴직

✔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직기간은 1년 이내 이며,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 가]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육아시간 24개월 산정방식은 ①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월단위로 차감(최초사용한 기산일부터 다음달 기산일의 전일까지를 1개월로 봄)하고, ②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을 합하여 1개월로 차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 어린이집 휴업,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육아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허용

✔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를 위해 필요 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허용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 전일제 공무원은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근무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전일제 공무원으로 회복됩니다.

4. 육아 물적 지원

[각종 수당]

가족수당

✔ 자녀 양육 시, 첫째는 3만원, 둘째는 7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11만원의 가족수당이 매월 지급됩니다.

➪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

✔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당 1년입니다.

Q. 부부공무원이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부부공무원 모두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부부 중 1인에게는 육아휴직 첫 3개월까지는 월봉급액 100%(250만원 상한)를 지급합니다.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 재외근무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됩니다.

[맞춤형 복지]

가족점수 부여

✔ 자녀 양육 시, 첫째 50점(5만원), 둘째 100점(10만원), 셋째 이후 자녀 200점(20만원)의 맞춤형 복지점수가 매년 부여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사업]

공무원 연금대출

✔ 미취학자녀 육아, 3자녀 이상 양육,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등은 사회정책적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취학자녀 및 3자녀 이상 양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23년 기준으로, 미취학자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의미하고, 3자녀 이상 양육은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2명 이상 혹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시, 미성년 자녀 양육 가정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5.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

- 이용대상 : 만 0세에서 만 5세 취학 전의 각 정부청사 입주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자녀
- 이용시간 : 평일 07:30 ~ 19:30, 토요일 07:30 ~ 15:30

청사	어린이집	위치 등
세종	꿈샘	세종시 밀마루길 6(8동 우정사업본부 근처) 044) 262-1676 　http://sejongdreamkids.com
	라온	세종시 갈매로 381(정부세종청사 문화관 맞은편) 044) 866-2017 　https://raonkids.kidsnote.ac
	빛들	세종시 도움5로 19, 8동(우정사업본부) 1~2층 044) 863-1542 　bitduel.co.kr
	솔비타	세종시 도움8로 11-20 044) 864-8123 　http://www.solvita-child.co.kr
	아이세상	세종시 국세청로 8-14(국세청 인근) 044) 417-1501~2 　http://www.isesangkid.com
	아이온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1(산업부) 1층 044) 715-7007 　http://aion.or.kr
	예그리나	세종시 갈매로 477, 4동(과기정통부) 1층 044) 200-1571(044) 868-5040) http://www.sejongyegrina.co.kr
	올고운	세종시 갈매로 408, 14동(문체부) 1~2층 044) 998-3131 　http://www.allgoun.co.kr
	윤빛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2(산업부) 1~2층 044) 715-7005 　http://www.yunbit.co.kr
	이든샘	세종시 다솜2로 94, 5동(농식품부) 1~2층 044) 262-1676 　http://cafe.daum.net/edensam
	차오름	세종시 다솜3로 15(제15주차장내, 문체부 인근) 044) 862-1934 　http://cor-child.co.kr
서울	푸르미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02) 737-7327 　http://www.purumicc.co.kr
	한빛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39(창성동) 02) 735-8817, 6400 　http://hanbit.kidsnote.ac
과천	과천청사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38(중앙동) 02) 504-3004~5 　http://www.gckids.co.kr
	청초롬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1-2) 02) 3679-3774~5 　http://www.puruni.com/crr
대전	다솜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북문 042) 719-8082 　http://www.dasomkids.co.kr
	새롬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북문 042) 481-6422 　http://www.saeromkids.com
	아람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북문 042) 481-6441 　http://www.tjkid.co.kr
대구	행복한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업무A동 B1층 053) 635-7911~2 　http://www.happynursery.co.kr
인천	초롱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1, 1층 032) 588-4536
광주	꽃초롱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062) 975-5700 　http://www.crkids.kr
경남	예다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1층 055) 981-6321 　http://www.yedaumkids.com
제주	청사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064) 727-5570 　http://cafe.daum.net/jejuchungsarang
고양	푸르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1층 031) 966-3396 　http://purumigy.co.kr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 통합 사이트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순서 관리 등 종합 정보 제공

정부세종청사 직장 어린이집 사이트

정부대전청사 직장 어린이집 사이트

인사혁신처

* 관련 정보는 인사혁신처(https://www.mpm.go.kr) 홈페이지(새소식-간행물-"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번호	제출서류명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
2	응시원서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	필수	□
3	이력서	필수	□
4	자기소개서	필수	□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필수	□
8	자격요건 관련 학위 및 경력증명서 등 사본	필수	□
9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 사본	해당자만	□
10	주민등록초본 사본 (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해당자만	□
11	*※ 기타 추가 서류 기재*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스테플러를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성명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기관(일반임기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대변인		
응시자격		□ 자격(2호), □ 경력(3호), □ 학위(10호)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대변인	
응시자격		□ 자격(2호), □ 경력(3호), □ 학위(10호)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③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⑤ **정부수입인지** : 5급 이상은 10,000원, 6·7급/연구사/전문경력관은 7,000원,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대변인	응시자격요건	예)학위-②	성명	

2. 응시자격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ㅇㅇㅇ학		'00.00.00	ㅇㅇㅇ학 석사	

3. 우대요건 *해당자만 작성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과장 (4급)	*운전직의 경우 '운행차종(인승)'기재 예) 대형버스(45인승)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만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 】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ㅇㅇ분야 경력 요건 중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8년의 경력은 '나.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다.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작성요령

- 직무기술서상 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을 시간순으로 기재

. 근무기관,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대변인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1) 직무수행능력 및 본인의 강점·장점

2) 임용예정직위와의 직무적합성

-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용예정직위와 어떻게 관련이 있고 적합한지 기술

3) 본인의 단점 및 보완해야 할 역량

4) 기타 본인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례 등

- 대인관계, 성품, 근무자세, 공직자로서의 청렴·도덕성 등 자유롭게 기술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대변인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임용예정직위의 담당직무에 대하여 직무수행 추진계획 및 비전,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 구체적으로 작성(2매)*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에 따른 학력·경력·자격증, 수상실적,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 제5항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서기관(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 관련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